

1. 자연공원법 개정안

2. 관광사업법시행 규칙중 개정령

◎ 건설부공고 제83호

자연공원법 개정안

1986. 7. 5.

1. 법령명 : 자연공원법개정안
2. 개정의 주요내용 및 그 취지
 - 가. 공원계획의 변경에 대하여
공원계획을 재정비하지 아니하여 현지 여건과 맞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공원계획은 결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기간마다 여건 변동에 따른 타당성 여부가 검토되도록 할 것임.
 - 나. 공원용도 지구안에서의 허용행위기준
 - (1) 자연보존지구내에서 공원자원과 조화되는 사찰의 증·개축 및 신축을 금지 하였던 것을 문화공보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사찰의 복원과 사찰 경내지에서의 불사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하고 또한 자연보존 상태의 원시성이나 수려한 자연 풍경을 현저히 저해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산림법에 의한 조림·육림·벌채 등 산림사업과 임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여 공원자원보존과 사유재산권의 보호를 조화되도록 할 것임.
 - (2) 자연환경지구내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의 금지는 기득권 보호면에서 문제가 있으므로 당해 공원지정 이전의 건축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증축·개축·재축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자연풍경과 조화되는 범위안에서 허용할 것임.
 - (3) 현재 농어촌지구에는 도시 취락의 형태가 포함되어 있어, 그 명칭이 부적당하므로 이를 취락지구로 변경 하고 취락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원 약국·이용원·미용원 및 일상용품 판매시설 등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시설물의 설치를 허용토록하여 지역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임.
 - 다. 공원관리청의 직무에 대하여
현재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각 시·도에 위임함으로써 1개의 공원을 행정 구역별로 여러기관이 관리한 결과, 관리의 다원화, 업무의 중복, 재정형편 등에 따른 수동적인 공원관리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국립공원의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시·도에의 위임관리로부터 국가 직접 관리체제로 전환하도록 위임조항을 개정할 것임.
- 라.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현재 각급 공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한계가 불분명하므로 공원의 지정·폐지 및 구역변경에 관한 사항,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기타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명시할 것임.
- 마. 공원개발을 위한 기본설계 작성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계획에 의한 집단 시설지구를 개발하거나 공원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있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 시설의 배치계획, 기본구조, 형식, 외벽의 색채, 사용재료 및 자재 등에 관한 기본설계를 미리 작성하도록 할 것임.
- 바. 공원보호구역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 허가 등 기준에 대하여
현재 공원보호구역내에서 건축물 및 공작물허가 등 행위허용 기준이 명시 되지 아니하여 기준 적용이 불분명하므로 취락지구에 준하여 허가토록 할 것임.
- 사. 탐방객의 공원입장 제한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자원의 보호·육성, 훼손된 자연의 회복, 이용자의 안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 지역적 범위를 한정하여 공원내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아. 명예관리인 위촉 시행에 대하여
공원관리청은 공원애호와 공원이용의 올바른 계도 등을 위하여 공원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명예관리인으로 위촉 하여 공원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한 계도를 하도록 할 것임.
- 자. 공원구역과 도시계획구역과 중복된 구역관리에 대하여
공원구역과 도시계획구역이 중복 지정된 곳 중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1조를 적용 하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으로부터 도심쪽에 있는 공원구역에 대하여는 자연공원법과 도시계획법을 함께 적용 토록 할 것임.
- 차.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 등의 의제 사항에 대하여

현재 공원관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협의된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 공원 관리업무의 중복과 공원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기 협의된 공원계획에 의한 공원사업 시행에는 문화재보호법 제20조 4호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허가를 건축허가시 복합 민원처리의 경우와 같이 의제하도록 할 것임.

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에 대하여 건설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을 보호하고 공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토록 할 것임.

- (1)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 (2) 임원은 이사장 1인, 이사 9인 이내, 감사 1인을 둔다.
- (3) 공단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사업의 시행
- 나)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공원시설의 관리
- 다) 공원구역안에서의 청소 등 미화업무
- 라) 기타 건설부장관이 위탁한 사항

타. 국립공원협회의 설립근거에 대하여 현재 국립공원협회의 설립근거는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이를 자연공원법에 의한 법인으로 하기 위하여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자의에 따라 국립공원 및 자연보존의 동호인과 국립공원구역내의 공원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도화 할 것임.

3. 의견제출 :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86년 7월 25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 (16절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건설부장관(참조 : 자연공원과장 503-734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이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의 3중 “제 1조제 1호, 제 2호, 제 4호, 제 5호 및 제 7호의 서류”를 “제 1조제 1호·제 2호·제 4호·제 5호·제 7호 및 제 5조제 1항제 4호의 서류”로 한다.

제 5조제 1항중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 동항에 제 1호 내지 제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주주총회 회의록사본(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3. 주주 또는 출자자현황
4.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업진단 기관이 작성한 경영진단보고서

제 5조제 2항중 “합병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하고, 동조동항에 제 1호 내지 제 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합병계약서 사본
2. 주주총회 회의록 사본(주식회사의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 등본
4. 주주 또는 출자자 현황

제 6조제 1항 및 제 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요금 설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숙박비·교통비·음식비·안내수수료 등 이행요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별지 제 7호 서식의 신고서에 첨부하여 실시 30일전에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여행알선업자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료에 의하여 산출한 여행요금표(외국인단체 여행요금을 제외한다)를 당해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 8조제 1항에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골프장업의 경우에는 모집예정회원수 제 8조제 2항제 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골프장의 모집예정회원수, 홀의 길이 및 면적
8. 사업장별 주된 시설의 종류·수량 및 면적(종합휴양업의 경우에 한한다)

제 12조 제 1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제 12조 제 2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라.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제 14조 제 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관광호텔업에는 항공사·여행사·환전소·매점(호텔이용객에게 제공하는 토산품점 기타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하되, 당해시설로서 주로 호텔이용객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은행·의료시설(약국·치과 및 의무실에 한한다)등 호텔이용객의 편의에 제공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외의 시설은 당해 시설에 출입구 또는 승용승강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제 15조중 “별표 6의 3. 별표 7”을 별표 6의 3. 별표 6의 4. 별표 7”로 한다.

제 16조 제 2호 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목에(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청소년호텔업

- 가) 종류 및 객실수
-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 다) 식당 및 휴게시설

(6) 가족호텔업

- 가) 객실수
- 나) 대지면적 및 연건축면적
- 다) 식당 및 휴게시설

제 16조 제 2호 나목(2)의 (나) 본문중 “극장 식당”을 “관광극장식당”으로 한다.

제 24조의 2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관광숙박업의 경우

가. 특등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업무는 총지배인 자격증 소지자

나.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지배인의 업무와 특등급관광호텔의 현관·객실 식당부문의 업장별 책임자업무는 1급 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다. 2등급이하 관광호텔(가족호텔을 포함한다)의 지배인업무와 1등급 관광호텔의 업장별 책임자업무는 2급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다만, 청소년호텔의 경우에는 1종 청소년호텔의 지배인업무는 2급 지배인자격증 소지자 또는 청소년 호텔관리인· 2종청소년호텔의 지배인업무는 청소년호텔관리인

라. 현관·객실·식당의 접객업무는 관광종사원 자격증 소지자. 다만, 청소년호텔의 경우에는 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관광종사원자격증 소지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마. 관광호텔주방의 조리사업무는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교통부령제 839호

관광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

1986. 6. 19.

제28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숙박업종사원

- 가. 총지배인
- 나. 1급지배인
- 다. 2급지배인
- 라. 청소년호텔관리인
- 마.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제28조의2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관광종사원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제28조의3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30조 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관광종사원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통역안내원의 경우

- 가. 4년제대학을 졸업한자로서 외국에서 10년이상 계속 거주한자 (재외공관장으로부터 거주확인을 받은자에 한한다)
- 나.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외국어를 가르친 경력이 있는 전임강사 이상인 자

2. 총지배인의 경우

- 가. 호텔관련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나. 가목과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3. 청소년호텔관리인의 경우

국민학교이상의 정교사자격증 또는 관광숙박업종사원자격증 소지자로서 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청소년호텔관리인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

4.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의 경우

- 가.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 나. 한국관광공사가 설립 또는 운영하는 관광호텔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에서 호텔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 (수험자격) ① 관광종사원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18세이상인 자라야 한다.

② 관광숙박업종사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총지배인

- 가. 1급지배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호텔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특등급관광호텔의 임원으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1급지배인

가. 2급지배인자격증을 소지하고 관광호텔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5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관광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2급지배인

가. 관광숙박업종사원(조리사를 포함한다) 자격증소지자로서

관광호텔에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년제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1. 2급지배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의 2급지배인 양성과정을 졸업한 자

2. 현관·객실 및 식당접객업무에 종사하는 종사원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의 관광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자

제33조 제2항 및 제4항을 삭제하고, 동조제6항중 “제3항 및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교육)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에 합격하였거나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시험에 합격한 날 또는 자격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월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총지배인 자격을 인정받은 자, 통역안내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른 종류의 통역안내원시험에 합격한 자 및 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중 “관광사업자에게”를 “도지사 및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연수기관에”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할

지정관광연수기관의 교육인원, 교육시기 및 취업종사원의 현황을 매년 11월말 까지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계획에 의하여 당해 도의 교육인원의 차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8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56조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관광지개발계획서(관광시설계획, 관광지관리계획 및 관광지개발조성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을 포함한다)

7. 조감도 및 종합배치도(축적 500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시설물 및 조경계획등을 표시한 것이어야 한다)

8. 토지조서 기타 관광지 조성계획에 필요한 서류

제60조 제3호중 “휴양 또는 사진촬영등을 위한 시설”을 “휴양·사진촬영 또는 자동차정류장의 시설”로 한다.

[별표1] 제1호가목 단서중 “영업소를 2개이상”을 “영업소”로 하고, 동표 제3호 나목중 “100제곱미터”를 “66 “제곱미터”로 한다.

[별표4] 및 [별표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6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8]의 (9)중 (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외국인에 대하여는 회원권의 양도 및 상속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입회 시켜야 한다.

[별표11]·[별표14]·[별표16] 및 [별표18]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계약서 사본 1부

가. 국제여행알선업의 경우

(1) 외국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에 관한 계약서 사본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 업자와 체결한 항공권매에 관한 계약서 사본

나. 국내여행알선업의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체결한 운송에 관한 계약서 사본

다. 여행대리점업의 경우

- (1) 국제여행알선업자와 체결한 여행알선업무에 관한 계약서 사본
- (2)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총대리점업자와 체결한 항공권판매에 관한 계약서 사본

6. 경영진단서 1부

[별지 제7호서식]의 구비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비서류

숙박비·교통비·음식비·안내수수료 등 여행요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 [별지 제11호서식]중 가 및 나의 각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 업종별 영업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와 그 첨부서류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18호서식]중 수수료란의

청소년호텔 다음에 가족호텔을 추가한다.

[별지 제22호서식]의 응시자 참고사항

5중 “수입인지”를 “수수료”로 하고,

정부수입인지 다음에 수입증지를 추가한다.

[별지 제23호의 3서식]의 수수료란중

“500원”을 “2,000원”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6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4호서식]의 주 6중 4등급

등록관광호텔”을 “청소년호텔·

가족호텔”로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4의 개정규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여행알선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영업소를 설치한 국제여행알선업자에 대한 여행알선업등록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3 조 (관광호텔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관광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광호텔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광호텔업의 객실면적에 관한 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 4 조 (청소년호텔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호텔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청소년호텔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 의한 1종청소년호텔로 등록하였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 5 조 (유호음식점업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유호음식점업으로 등록을 한 자는 이 규칙시행후 2년 이내에 별표 11의 개정규정에 의한 특수유호음식점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조 (종합휴양업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스키장업으로 등록을 한 자 또는 스키장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 이내에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한 종합휴양업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7 조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당시 고등기술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관련학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2급지배인양성과정을 포함한다)에 재학중인 자와 졸업한 자에 대하여 재학중인 자에 대하여는 졸업후 1년까지, 졸업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칙 시행후 1년까지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인정 및 관광종사원의 수험자격에 관하여 제28조의 3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1년 이내에 관광종사원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③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제28조제 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급지배인 또는 2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 규칙 시행후 2년까지는 제24조의 2제 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특등급호텔의 총괄지배인 업무 또는 입장별 책임자업무를 할 수 있다.

[별표 6]

청소년호텔업시설기준 (제15조 관련)

(1종)

1. 객 실

가. 2인 이상 6인 이하의 수용에 적합한 상하단 침대식으로 하고, 총수용능력 60인 이상일 것.

나. 3등급 관광호텔이상의 시설기준에 준하는 일반용 객실을 수용능력 20인마다 1실씩 층별로 균형있게 추가로 설치할 것.

다. 온돌객실은 호텔경영상 필요한 때에 임의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객실수 및 객실면적은 “가” 목의 기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위생시설

객실별로 현대식 화장실 및 욕실설비를 갖출 것.

4. 부대시설

수용인원에 적합한 식당과 간이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휴게시설이 있을 것. 다만,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5. 기 타

가. 비상발전설비를 갖출 것.

나. 객실의 조명전원(타임스위치를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 용기구 또는 집중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점멸이 가능하도록 할 것.

(2종)

1. 객 실

4인 이상 10인 이하로 청소년이용에 적합한 겸소한 시설을 갖출 것.

2.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위생시설

층별로 수용인원에 적합한 현대식 공용화장실 및 욕실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4. 부대시설

가. 수용인원에 적합한 지급식 식당과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설비를 갖출 것.

나. 식품포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다만, 청소년의 휴양이나 선도에 부적합한 유흥오락시설은 설치할 수

관광호텔업 등급별 시설기준 (제14조 관련)

시 설	등 급	특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1. 객 실					
가. 면적(욕실면적을 포함한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싱글(Single)		13제곱미터 이상(다만, 객실수는 전체객실수의 10%이내어야 한다)			
다블·투윈(Double Twin)		19제곱미터 이상			
스위트(Suite)		26제곱미터 이상			
한 실		19제곱미터 이상			
나. 냉·난방시설		중앙집중식 냉·난방겸용 공기조절기(에너지절약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중앙집중식 또는 독립조절식 냉·난방 겸용 공기조절기(에너지 절약 설비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스팀 및 에어컨디셔너로된 냉·난방시설(에너지 절약 설비를 포함한다)을 설치할 것
다. 환기설비		자동환기 설비를 설치할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라. 출입문자물쇠		자동 또는 반자동 폐쇄정으로 하고 출입문 내부쪽에 쇠파스 안전폐쇄기를 설치할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마. 침 대		1인용의 경우 90센티미터×195센티미터 이상, 2인용의 경우 138센티미터×195센티미터 이상의 침대를 설치할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바. 전 화		객실에서 직접 호출할 수 있는 자동식전화(국제전화를 포함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 전화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식전화를 설치할 것. 다만, 자동식 전화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등급의 경우와 같다.	전화를 설치할 것
사. 욕 실					
(1) 면 적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2) 욕 조		길이 115센티미터 이상일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2. 현관로비		1. 면적은 ○120실미만의 경우 : 객실수용인원×0.5제곱미터 이상 ○120실이상 300실미만인 경우 : 객실수용인원×0.4제곱미터+40제곱미터 이상 ○300실이상 500실미만인 경우 : 객실수용인원×0.3제곱미터+100 제곱미터 이상 ○500실이상의 경우 : 객실수용인원×0.2제곱미터+200제곱미터 이상 (이 경우 객실수용 인원은 1실당 2인으로 본다.) 2.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휴게실 설비를 설치할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3. 승용승강기		4층건물 이상에는 수용인원에 상응하는 엘리베이터를 투숙객용과 종사원용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위치에 설치할 것	4층건물 이상에는 수용인원에 상응하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1등급의 경우와 같다.	1등급의 경우와 같다.
4. 식당 등		한식당·양식당·다실·연회실 및 카테일바를 설치할 것	양식당·다실·연회실 및 카테일바를 설치할 것	양식당·다실·카테일바를 설치할 것	양식당 및 다실을 설치할 것

등급 시설	특 등 급	1 등 급	2 등 급	3 등 급
5. 주 방	현대적 주방시설을 갖춘 것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6. 소방·방재시설	1. 중앙집중식 소방·방재센터를 설치할 것 2. 고객안전용 비상 카메라를 설치할 것	중앙집중식 소방·방재센터를 설치할 것	소방·방재시설을 설치할 것	2등급의 경우와 같다.
7. 발전기등	1. 비상 발전설비를 갖춘 것 2. 객실의 조명전원(타일 스위치를 설치한 입구등의 조명전원을 제외한다)은 객실의 출입문 개폐용 기구 또는 집중 제어방식을 이용한 시설 기타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기구나 시설에 의하여 자동 또는 반자동의 접점이 가능하도록 할 것 3. 기타 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특등급의 경우와 같다.

유형음식점 시설기준 (제15조 관련)

구 분	시 설 기 준
공 통 한 국 음식점	<p>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형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자일 것</p> <p>외국인관광객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p> <p>1. 건물면적 연면적이 서울지역은 660제곱미터 이상, 부산지역은 396제곱미터 이상, 기타지역은 23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한국식 정취를 갖춘 이담하고 우아한 건물일 것.</p> <p>2. 수용능력 가. 서울지역 (1) 99제곱미터(10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1실 이상이 있을 것 (2) 66제곱미터(6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2실 이상이 있을 것 (3)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2실 이상이 있을 것 나. 부산지역 (1) 66제곱미터(6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1실 이상이 있을 것 (2)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2실 이상이 있을 것 (3) 33제곱미터(2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2실 이상이 있을 것 다. 기타지역 (1) 50제곱미터(4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1실 이상이 있을 것 (2) 33제곱미터(2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2실 이상이 있을 것 (3) 20제곱미터(10명이상 수용) 이상의 방 2실 이상이 있을 것</p> <p>3. 실내구조 고유의 한국적 분위기를 풍길 수 있도록 서화·문갑·병풍 및 나전칠기 등으로 장식할 것</p> <p>4. 정 원 이담하고 우아한 99제곱미터 이상의 정원이 있을 것</p> <p>5. 환기시설 벽 또는 천정에 자동환기설비를 할 것</p> <p>6. 냉·난방시설 스팀과 에어컨등으로 냉·난방설비를 할 것</p> <p>7. 방음장치 완전한 방음장치를 할 것</p> <p>8. 주 방 가. 환기설비를 할 것 나.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집기와 냉정고가 있을 것 다.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 이상이 있을 것</p> <p>9. 고전무용 가무음곡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국고유의 악기를 확보하고 있을 것</p>

구 분	시 설 기 준
	<p>10. 화 장 실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좌변기를 포함한 수세식변기 및 소변기를 수요에 적정하도록 설치할 것이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p> <p>11. 교 통 정문에 대형차량이 주차 또는 정차할 수 있을 것</p>
관광극장식당	<p>외국인관광객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p> <p>1. 면 적 연건평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p> <p>2. 수용능력 홀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4인조 탁자 120개 이상이 있을 것</p> <p>3. 무 대 관광객에게 민속과 가무를 감상하게 할 수 있도록 특수조명장치 및 배경을 설치한 100제곱미터 이상의 무대가 있을 것</p> <p>4. 현관로비 손님이 대기할 수 있는 100제곱미터 이상의 휴게시설을 갖출 것</p> <p>5. 실내구조 전면 용단 또는 타일을 깔 것</p> <p>6. 환기시설 벽 또는 천정에 자동환기 설비를 할 것</p> <p>7. 냉·난방시설 스팀과 에어컨디셔너로 냉·난방설비를 할 것</p> <p>8. 방음장치 완전한 방음장치를 할 것</p> <p>9. 주 방 가. 환기설비가 되어 있을 것 나. 음식물(양식 또는 중식)을 위생적으로 조리·보관할 수 있는 집기와 냉장고가 있을 것 다.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 이상이 있을 것</p> <p>10. 화 장 실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좌변기를 포함한 수세식변기 및 소변기를 수요에 적정하도록 설치할 것이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가 있을 것</p> <p>11. 교 통 수용에 적정한 주차장시설을 구비하고 있을 것이며, 대형차량이 정문에 정차할 수 있을 것</p>
특수유 홍음식 점	<p>주한유엔군 및 외국인 선원의 접대에 필요한 다음의 설비가 구비되어 있을 것</p> <p>1. 주방을 포함한 홀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일 것</p> <p>2. 홀바닥은 인조석 연출로 수세식 청소가 용이한 것일 것</p> <p>3. 창문에는 방충용망이 설치되고 외부로부터 홀내부가 보이지않도록 되어 있을 것</p> <p>4. 환기설비가 있을 것</p> <p>5. 스팀(온풍기)이나 에어컨디셔너 등으로 냉·난방설비를 갖출 것</p> <p>6. 화재 등 비상시에 긴급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있을 것</p> <p>7. 화장실은 외국인의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세식좌변기 2조 이상 소변기 2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를 사용할 수 있는 세면대와 자동환기시설을 갖출 것</p> <p>8. 주 방 가. 음식물을 위생적으로 처리·보관할 수 있는 집기·냉장고가 있을 것 조 나. 냉·온수를 항시 사용할 수 있는 3조식 싱크 1대 이상을 설치하고 있을 것</p> <p>9. 홀에는 무도를 하거나 즐길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무도장을 설치하고 특수조명시설 및 방음장치를 할 것</p>

- 없다.
- 다. 실내·외에 각 1식 이상의 운동오락시설과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33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를 확보할 것.
- 라. 수용능력에 적합한 집회 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회의장시설을 갖출 것. 다만, 다목적 실내운동 오락시설장이 회의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추었을 때에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
관광지 또는 국·도립공원과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3층이하의 건물일 것.

[별표 6의 4]

- 가족호텔업시설기준(제15조 관련)
1. 객 실
가족단위 이용객의 숙박에 적합한 한식 또는 양식의 겸소한 시설을 갖출 것.
2. 현 관
총수용인원 1인당 0.5제곱미터 이상의 면적을 확보할 것.
3. 부대시설
가. 식 당
가족단위 이용에 적합한 대중식당을 설치할 것.
나. 취사장
수용인원의 30% 이상이 개별취사를 할 수 있는 공용취사장 설비를 매층별로 설치할 것.
다. 매 점
식료품점이나 간이매점이 있을 것.
라. 운동시설
1식 이상의 육내운동시설과의 2식 이상의 육외운동 시설을 갖출 것.
4. 입지조건 및 건축구조
관광지 또는 국·도립공원이나 기타 자연경관이 수려한 경승지로서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 3층이하의 건물일 것.
- [별표 7]
종합휴양업시설기준(제15조 관련)
1. 공통기준
가. 면적은 165,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만, 관광사업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조성계획 또는 관광단지개발촉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다음의 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1) 숙박시설(숙박업법시행규칙에 의한 여관 감등급 시설기준이상)
(2) 음식점시설(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의한 음식점영업의 시설기준이상)
2. 민속문화자원 소개의 경우
가. 한국고유의 건축물(초가 및 와가)이 20동 이상 있을 것.
나.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비치되어 있을 것.
다. 민속가구를 소개할 수 있는 공연장이 갖추어져 있을 것.
라. 3종이상의 민속생활도구 또는 관광기념품을 제작 판매하는 장소가 있을 것.
마.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3. 스키장의 경우
가. 길이 500미터 폭 30미터이상의 스프로프를 2개이상 갖출 것.
나. 500미터이상의 리프트를 2개이상 설치할 것.
다. 스키장내 구조물은 이용자의 안전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하며 필요시 보호대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라. 응급처치 설비를 갖출 것.
4. 휴양시설의 경우
다음에 기재되는 해수욕장·수렵장·동물원·식물원·수족관 및 운동오락시설중 1개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 가. 해수욕장
(1) 수용인원에 상응한 간이목욕시설·공중화장실·탈의장 및 휴게시설 등이 있을 것.
(2) 인명구조용 구명정·망루대 및 응급처치 설비등의 시설이 있을 것.
(3) 탐수욕장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나. 수렵장.
(1) 수렵대상조수가 2종이상 있을 것.
(2) 수렵에 필요한 클럽하우스가 있을 것.
(3) 수렵객이 이용할 수 있는 염총 및 염견이 있을 것.
- 다. 동물원
(1) 50종이상의 동물을 보유할 것.
(2)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 라. 식물원
(1) 온실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식물종류수는 1,000종 이상일 것.
(3)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 마. 수족관
(1) 건축연면적은 2,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2) 어종수(어류외의 것은 제외한다)는 100종 이상일 것.
(3) 관광객을 위한 휴게시설이 있을 것.
- 바. 운동오락시설
(1) 축구장·야구장·배구장·농구장·정구장·탁구장·수영장 및 승마장등의 운동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2) 탐승좌석 10석이상의 회전형 관람차·모노레일차·관람용기관차·회전목마·케이블카·유람차 및 유람선등의 오락시설중 3종이상의 시설을 갖출 것.

<p>造景設計製圖技法</p> <p>金承煥·張泰賢 著</p> <p>技文堂刊 / 定價 8,500원</p>	<p>建築法規問題解説</p> <p>金聖培 編著</p> <p>技文堂 刊 / 定價 5,000원</p>	<p>改訂 造景技師問題解説 (I·II)</p> <p>金承煥·李載根 編著</p> <p>技文堂 刊 / 定價 各권 6,000원</p>
---	---	--